

전자금융공동망업무 시행세칙

2000.10.19 제정 2001. 2.20 개정 2001.10. 6 개정 2004. 4. 2 개정
2004.10.26 개정 2006. 1.10 개정 2006. 5.16 개정 2007. 4.18 개정
2007. 9.19 개정 2009. 1.14 개정 2009. 2.25 개정 2011. 9.20 개정
2014.11.24 개정 2015. 9.23 개정 2015.10.15. 개정 2015.11.18 개정
2015.12.23. 개정 2016. 7.27 개정 2018. 6.25. 개정 2018. 12.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고객서비스 업무” (이하 “대고객업무”라 한다)란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결제원에 설치된 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라 한다) 또는 참가기관에 설치된 시스템(이하 “기관시스템”라 한다)에 접속한 고객에게 각종(계좌, 자기앞수표 등) 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홈핀뱅킹 중계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란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기관시스템에 접속한 고객에게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타행이체업무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전자금융업무”란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 등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각종 업무를 말한다.
4. “취급기관”이란 전자금융업무를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기관을 말한다.
5. “개설기관”이란 대고객업무의 조회대상 계좌 또는 중계업무의 타행이체 수취 계좌 등을 개설한 기관을 말한다.
6. “취소거래”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운영시간동안 이미 처리가 완료된 거래를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거래를 말한다.
7. “장애”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구성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온라인에 의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미완료거래”란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시스템이나 회선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 거래전문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한다.
9. “자금청구반환”이란 참가기관이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과 해당기관의 거래집계내역을 대사·확인하여 장애발생, 미완료거래 등으로 결제금액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관련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송금된 경우 해당거래의 결제자금을 실시간으로 청구 및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 (이하 “자금청구반환시스템”이라 한다)이

란 참가기관 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청구 및 반환하기 위하여 결제원에 설치한 중계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② 이 세칙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규약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업무) ① 전자금융업무는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를 적용업무로 한다.

② 대고객업무는 이용매체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화를 이용한 계좌 및 자기앞수표 조회 등 음성에 적합한 업무
2. PC를 이용한 계좌 및 자기앞수표 조회 등 문자 및 화상에 적합한 업무
3. 기타 매체가 추가될 경우 각 매체의 특성에 적합한 업무

③ 중계업무는 타행이체(취소), 거래확인조회,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 및 자기앞수표조회를 적용업무로 한다.

④ 참가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적용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원 및 참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금융업무의 처리

제1절 일반사항

제4조(신규 참가통보) 결제원은 전자금융업무 신규참가기관이 있는 경우 동 내용을 신규 참가기관의 업무개시 2개월 전까지 다른 참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참가기관의 의무) ① 참가기관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상호 신뢰와 성의를 가지고 전자금융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적용계좌) 전자금융업무의 적용계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구불예금 :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2. 기타예금 : 당좌, 가계당좌, 신탁예금, 적금
3. 기타 각 참가기관이 펌뱅킹서비스를 위해 설정한 가상계좌예금과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제7조(이용대상자) ① 대고객업무 이용대상자는 규약 제4조의 제5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중계업무 이용대상자는 규약 제4조의 제5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8조(운영시간) ① 전자금융업무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05분부터 23시55분까지로 하되, 07시부터 23시30분(이하 “공동운영시간”이라 한다) 이외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 결정한다.

② 참가기관의 자기앞수표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업무 미실시 시간동안 동 업무처리는 결제원에서 대행처리 한다.

③ 중계시스템은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대고객업무의 개시 및 종료시각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중계업무의 시스템 개시시각은 00시 05분으로 하고 종료시각은 23시 55분으로 한다.

④ 기관시스템의 개시 및 종료시각은 기관 업무개시 및 종료시각으로 한다.

제9조(거래의 제한) 1일 타행이체거래 횟수/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오류횟수 등 고객의 전자금융업무 거래제한과 제한해제에 대한 사항은 각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0조(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①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전화, PC 등 전자금융이용매체, 중계시스템, 기관시스템, 네트워크, 각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②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교체시스템으로의 업무개시 이전에 결제원과 시스템 변경 테스트를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의 전산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금융공동망 전산시스템 기본설계서(이하 “설계서”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설계서는 규약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결제원이 정한다.

제11조(전문의 종류 및 검증) ① 전자금융업무에서 사용하는 전문의 종류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참가기관은 모든 전문에 대하여 해당기관 검증방법에 의하여 전문을 검증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분쟁책임은 해당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거래집계내역의 확인) ① 참가기관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거래의 건수·금액 집계내역을 결제원에서 집계하여 전송한 건수·금액과 대사·확인한다.

② 참가기관은 미완료거래로 인하여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과 참가기관의 거래집계내역이 상이한 경우,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상의 건수, 금액을 당일의 건수, 금액으로 처리해야 하며, 참가기관간의 전자금융업무 차액결제도 결제원의 집계금액을 기준으로 결제한다.

③ 결제원은 정상적으로 송수신 완료하여 처리한 당일 거래를 기준으로 참가기관별, 차대변 거래별 거래집계내역을 작성하여 참가기관으로 전송한다.

④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 중 한쪽 또는 양쪽 장애로 인하여 전자금융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참가기관의 운영담당부서 책임자는 결제원 운영담당부서 책임자에게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기관분 「거래집계내역」을 확인한다.

⑤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발생 등으로 당일 거래집계 및 자금결제 등이 지연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은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거래의 기록 및 보관) ①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각 업무의 처리결과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임의의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관은 타행이체 및 타행이체취소 거래기록을 증빙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결제원은 일별, 기관별, 월간 거래기록 자료를 서면 또는 디스크 등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자료의 보존시 원본 입증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연계결제시스템의 처리) 규약 제2조 제4호의 연계결제시스템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10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대고객업무 처리

제15조(대고객업무의 종류) 대고객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좌조회 : 고객이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결제원의 중계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의 계좌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회하는 업무
2. 자기앞수표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 : 고객이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결제원의 중계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소지한 자기앞수표의 사고유무를 조회하거나 사고수표를 신고하는 업무
3. 비대면 실명확인 조회 : 고객이 PC 등을 이용하여 참가기관의 기관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개설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업무

제16조(대고객업무의 처리) ① 계좌 조회는 고객의 조회요구를 결제원이 개설기관에 송신하며, 이에 대한 수신내용을 고객에게 응답한다.

② 자기앞수표조회는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결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고수표정보로도 응답할 수 있다.

③ 자기앞수표 사고신고접수는 고객의 수표 사고신고내역을 결제원에서 접수한다.

④ 비대면 실명확인 조회는 고객의 요구를 취급기관이 결제원을 경유하여 개설기관에 전송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송받아 고객에게 응답한다.

⑤ 기타 세척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업무의 처리요령이나 세부처리요령은 기본설계서에 따른다.

제17조(비밀번호 암호화) ①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대고객업무 거래전문 상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마스터키와 마스터키 전달을 위한 개인키(이하 “키”라 함은 마스터키와 개인키를 통칭한다)를 발급한다.

③ 마스터키는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일키로 한다.

④ 결제원은 생성된 키를 IC카드에 저장하여 참가기관에게 발급한다.

⑤ 참가기관은 아래의 경우 키의 변경 또는 재발급을 결제원 앞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키가 노출되었거나 노출위험성이 있는 경우

2. 키의 분실, 훼손, 멸실 등으로 키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키의 변경 또는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⑥ 참가기관은 마스터키의 변경 요청시에는 적용 예정일 4주전까지 요청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참가기관과 협의 후 마스터키를 변경하여 참가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키의 재발급 요청시(개인키의 변경 포함)에는 적용 예정일 2주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변경 및 재발급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⑦ 키의 변경 또는 재발급에 따른 IC카드 재발급시 참가기관은 기 보유한 IC카드를 결제원에 반납한다. 다만,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 ⑧ 참가기관은 수령한 키를 비밀번호 암호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결제원에서 수령한 키가 담긴 IC카드는 내화금고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환율정보 관리) (삭 제)

제19조(사고수표 관리) 사고수표 관리는 참가기관의 자기앞수표조회 및 사고신고 접수 업무 미실시 시간동안 동 업무처리를 결제원에서 대행하기 위해 필요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참가기관은 사고수표 신고접수시마다 온라인으로 결제원에 사고수표 정보를 전송한다.
2. 결제원은 참가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사고수표 정보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결번 발생시 결번을 참가기관에 온라인 전송한다.
3. 결번을 전송받은 참가기관은 동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사고수표 정보를 온라인으로 결제원에 전송한다.
4. 결제원은 참가기관 업무종료 후 고객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사고수표정보를 익일 업무 개시시각까지 해당 참가기관에 일괄전송 또는 FAX로 송부한다.

제3절 중계업무 처리

제20조(중계업무의 종류) 중계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행이체 : 고객이 전화, PC 등(창구 및 CD/ATM 제외)을 이용하여 기관시스템에 접속하여 취급기관의 고객계좌에서 개설기관의 수취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
2. 거액 타행이체 : 타행이체 중 제21조 제1항의 타행이체 출금한도를 초과하는 업무
3. 거래확인조회 : 타행이체 처리결과를 조회하는 업무
4.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 : 타행이체 관련 의심유의정보 및 금융사기 의심계좌 일시인출정지 정보를 참가기관 간 공유하는 업무
5. 자기앞수표조회 : 고객이 전화, PC 등(창구 및 CD/ATM 제외)을 이용하여 기관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소지한 자기앞수표의 사고유무 등을 조회하는 업무

- 제21조(타행이체 한도)** ① 타행이체의 출금한도는 10억원/건 이내에서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입금한도는 10억원/건으로 한다.
- ② 거액 타행이체의 출금한도는 10억원/건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입금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 제22조(중계업무의 처리)** ① 타행이체는 고객의 요구를 취급기관이 결제원을 경유하여 개설기관에 전송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송받아 고객에게 응답한다.
- ② 거액 타행이체는 연계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 10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거래확인조회는 취급기관이 결제원에 전송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받아 처리한다.
- ④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 공유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심유의정보 공유 : 타행이체 거래 발생 시 참가기관(취급기관)은 자체 기준에 의거 해당거래의 금융사기피해 의 심 여부를 판단하고,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타행이체 전문 전송시 의심유의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일시인출정지 정보 공유 : 참가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고객의 계좌가 금융사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계좌인 것으로 판단되어 일시인출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관련 참가기관에 일시인출정지 정보 공유 전문을 전송하여야 한다.
- ⑤ 자기앞수표조회는 제1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⑥ 기타 세척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업무의 처리요령이나 세부처리요령은 기본설계서에 따른다.

제4절 취소거래의 업무처리

- 제23조(취소가능거래)** ① 취소가능거래는 당일 발생한 거래 중 취급기관시스템(통신장비 등 포함)의 오동작으로 인한 착오거래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취소거래는 제8조 제1항의 당일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간 이후에는 취소처리 할 수 없다.
- 제24조(취소거래 처리절차)** 취소거래 세부처리절차는 설계서에 정한 취소거래처리절차에 따른다.

제5절 장애시 업무처리

- 제25조(장애시 업무처리원칙)** 장애시 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장애회복통보가 있을 때까지 장애기관에 대한 고객의 전자금융업무 거래를 의뢰받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의뢰받아 처리중인 거래가 전자금융공동망의 장시간 장애로 처리지연될 경우에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6조(장애시 고객안내)** ① 취급기관 장애일 경우, 다른 참가기관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고객을 안내한다.

② 결제원 또는 개설기관 장애일 경우, 장애복구 후 이용토록 하거나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한 개설기관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고객을 안내한다.

제27조(장애발생 통보) ① 참가기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장애내용, 발생사유, 복구 예상시간 등을 결제원에 유선으로 통보한 후, 설계서의 시스템장애처리절차에 따르며, 결제원은 별지양식 12의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에 참가기관의 장애사실을 기록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장애복구에 30분 이상 소요된 경우 참가기관은 별지양식 5의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통보서」를 작성하여 장애복구 익영업일까지 결제원에 FAX 또는 E-MAIL 등을 이용하여 송부한다.

② 결제원은 장애발생 참가기관이 의뢰하는 경우 다른 참가기관에 장애내용을 통보한다.

③ 결제원은 결제원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참가기관에 장애내용을 통보한다.

제28조(장애복구 통보) ① 참가기관은 장애가 복구된 경우 결제원에 장애복구를 통보한다.

② 결제원은 장애복구 참가기관이 의뢰하는 경우 다른 참가기관에 장애복구를 통보한다.

③ 결제원은 결제원의 장애가 복구된 경우 참가기관에 장애복구를 통보한다.

제29조(거래데이터 소실시 복구처리) ① 결제원은 거래데이터가 소실된 경우 즉시 전 참가기관에 유선으로 거래데이터 송부를 요청한 후, 별지양식 9의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요청서」를 작성하여 참가기관에 FAX로 통보한다.

② 참가기관은 결제원의 요청에 따라 보관된 거래데이터를 기록매체 또는 E-Mail 등을 이용하여 결제원에 송부한 후, 별지양식 10의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FAX로 통보한다.

③ 결제원은 참가기관에서 송부 받은 거래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실된 거래데이터를 복구하고 자금결제 등 후속처리를 완료한다. 다만, 참가기관 중 거래데이터가 소실되어 송부가 불가능한 기관이 있을 경우, 정상 송부한 참가기관들의 거래데이터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④ 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송부한 취합자료와 결제원의 취합자료 처리결과가 상이한 경우 이를 참가기관에 통보하며, 해당 참가기관은 자금의 반환 또는 청구가 필요한 경우 제2장 제7절의 자금 청구반환 처리에 따른다.

제6절 미완료거래의 업무처리

제30조(미완료거래의 종류) ① 취급기관의 미완료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제원으로 「타행이체(취소) (재)요구」 전문을 전송한 후, 그 처리결과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거래
2. 결제원으로 「타행이체(취소) 재요구」 전문을 전송하지 못한 거래

② 결제원의 미완료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기관으로 「타행이체 (재)요구」 전문을 전송한 후, 그 처리결과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거래
2. 개설기관으로 「타행이체 재요구」 전문을 전송하지 못한 거래

제31조(공동운영시간대의 미완료거래 처리) 취급기관과 결제원은 해당 미완료거래 전문을 재전송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32조(공동운영시간 종료 이후의 미완료거래 처리) ① 미완료거래에 대한 처리는 결제원이 참가기관에 송부한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요약」 및 「전자금융공동망 미완료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제원은 해당 미완료거래에 대하여 개설기관에서 정상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금결제자료를 작성하고, 「기본설계서」에서 정한 거래고유번호 관리절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 미완료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참가기관 앞으로 송부한다.

③ 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전자금융업무 거래내역(미완료거래 포함)과 해당기관의 거래내역(미완료거래 포함)을 대사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결제원의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참가기관간 자금청구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세칙 제2장 제7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사고수표 관련 미완료거래 처리) ① 결제원은 참가기관의 전자금융업무 종료 10분전까지 결번처리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 참가기관에 유선으로 결번내용을 통보하며, 결번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참가기관의 자기앞수표조회 및 사고신고접수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② 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번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 종료시까지 별지양식 7의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데이터 입력 및 해지 요청서」에 해당 사고수표 정보를 작성하여 FAX로 결제원에 송부한다.

제34조(미완료거래의 차액결제)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대에 처리하지 못한 미완료거래는 결제원의 일별 거래집계표를 기준으로 이 세칙 제2장 제7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며, 이 경우 결제원은 해당 처리분을 거래일에 관계없이 당일차 차액결제분에 포함한다.

제7절 자금 청구반환 처리

제35조(자금청구반환의 정의 및 처리협조) ① 자금의 청구 및 반환의뢰를 받은 참가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청구 및 반환업무에 대한 상세 처리절차를 각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자금반환기관은 반드시 자금청구기관의 청구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반환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자금청구반환시스템) 자금청구반환시스템의 전산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 기본설계서(이하 “자금청구반환설계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자금청구반환의 대상거래) 자금청구반환의 대상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완료거래 : 개설기관에서 결제원에 정상적으로 전송하지 못한 거래 중 「타행이체 거부보고」 및 「타행이체취소 승낙보고」와 관련된 취급기관 및 결제원의 미완료거래
2. 오동작에 의한 거래 : 취급기관시스템의 오동작에 의한 거래로서 의뢰고객 및 취급기관이 거래당일 확인하지 못하여 취소처리를 하지 못한 거래
3. 착오송금거래 : 타행이체 시 의뢰고객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기관,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송금된 거래
4. 기타 거래 : 기타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 및 참가기관 간의 확인에 의하여 자금의 청구 및 반환이 필요한 거래

제38조(자금청구반환의 운영시간) 자금청구 및 반환업무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 결정한다.

제39조(자금청구반환의 한도) 1회 자금청구 및 반환 금액의 한도는 제21조의 타행이체 1회 거래 한도에 따른다.

제40조(자금청구반환의 업무처리기간 및 보관기간) ① 자금청구기관은 원거래 발생 당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자금반환기관은 원거래 발생 익영업일부터 반환처리가 가능하다.

② 자금반환기관은 청구내역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다만, 공휴일이면 익영업일)에 동 청구 건에 대한 반환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된 반환 미처리 건에 대해서는 반환처리 완료기한의 익영업일까지 자금청구기관에 반환불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결제원은 자금청구 및 반환처리 내역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자금청구기관의 처리) ① 자금청구기관은 청구내역 및 사유가 포함된 자금청구 전문을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자금청구기관은 제42조 제2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청구 전문의 정상수신 여부를 통보받으면 동 처리 결과를 의뢰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금청구기관은 제42조 제3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반환 처리 전문 수신 시, 자금반환 처리 완료 여부를 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상반환일 경우 지체 없이 반환금액을 의뢰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처리하고, 반환불가일 경우 불가사유 및 내역을 의뢰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금청구기관은 제40조 제2항에 따른 반환처리 완료기한까지 자금반환기관으로부터 반환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반환불가로 보아 의뢰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재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결제원의 자금청구반환 처리) ① 결제원은 자금청구기관으로부터 제41조 제1항의 자금청구 전문을 수신하면 동 전문의 내용을 자금반환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자금반환기관으로부터 자금청구 전문의 정상수신 여부를 통보받으면 동 전문의 내용을 자금청구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결제원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자금반환기관으로부터 자금반환 처리 전문을 수

신하면 동 전문의 내용을 자금청구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결제원은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자금청구기관으로부터 자금반환 처리 완료 여부를 통보받으면 동 전문의 내용을 자금반환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3조(자금반환기관의 처리) ① 자금반환기관은 제42조 제1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청구 전문을 수신하면 정상수신여부를 결제원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을 수신한 즉시 청구내역을 반환처리 담당 영업점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 자금반환기관은 반환처리를 할 경우 사전에 수취인에게 반환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상반환여부 및 반환불가일 경우 불가사유를 포함하여 자금반환 처리 전문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자금반환기관은 제42조 제4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반환 처리 완료 여부를 통보받으면 동 처리결과를 제2항의 수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금반환기관은 수취계좌가 압류계좌 등 법적제한계좌임을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자금청구 전문 수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수취인에게 자금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부분청구 및 부분반환) ① 자금청구기관은 부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금반환기관은 원거래금액과 다르다는 사유로 반환불가 처리를 할 수 없다.

② 자금반환기관은 부분반환을 할 수 있으며, 자금청구기관은 청구금액 또는 원거래금액과 다르다는 사유로 반환금액 수신거부 처리를 할 수 없다.

제45조(자금청구반환의 예외사항처리) ① 자금청구기관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별지양식 11의 「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에 청구내역 및 사유를 기재하여 16시까지 자금반환기관에 FAX로 통보할 수 있으며, 자금반환기관은 FAX로 수신한 별지양식 11의 「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에 서명날인하여 자금청구기관에 회신하고 자금청구반환시스템을 통하여 반환처리 하여야 한다.

② 자금반환기관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별지양식 11의2의 「자금반환 의뢰서」에 자금반환 정상내역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17시까지 FAX로 통보할 수 있으며, 결제원은 FAX를 수신하여 해당거래 내역을 대사·확인한 후 수신일 익일에 자금반환 정상내역을 해당 자금반환기관 및 자금청구기관에 일괄전송 한다.

③ 자금청구기관 및 자금반환기관은 별지양식 11 및 11의2에 반드시 별지양식 1의 「인감신고서」로 결제원에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불능, 시스템 장애, 미완료, 오류거래 등 예외사항 발생 시 자금청구반환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청구반환 자금의 결제) ①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의 자금청구반환 관련 차액결제는 「전자금융공동망 결제지시서」에 포함하여 제3장의 처리방법에 따른다.

②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거래집계내역 대사·확인 결과 자금결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원거래일과 관계없이 당일의 결제금액에 포함한다.

제8절 긴급상황시의 처리

- 제47조(긴급기관 결정 신청)** ① 참가기관은 규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결제원에 긴급기관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규약 제7조 제1항 제1호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또는 참가기관이 긴급기관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참가기관이 긴급기관 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8조(긴급기관 해제)** ① 긴급기관은 긴급기관 발생사유가 소멸되어 전자금융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결제원에 긴급기관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긴급기관 해제를 결정한 경우 이를 참가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업무재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9조(긴급기관 적용기간)** 긴급기관의 적용기간은 그 결정시점으로부터 그 기관에 대한 전자금융업무 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기관 결정 이전이라도 규약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제원은 해당기관에 대하여 긴급기관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절 분쟁처리

- 제50조(분쟁처리 원칙)** ①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해당 참가기관은 결제원 처리기준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참가기관간에 분쟁발생시 해당 참가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해결에 힘써야 하며 해당 참가기관간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1조(참가기관간 분쟁처리)** ① 전자금융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참가기관간 분쟁처리 적용범위는 이 세칙 제10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한다. 단, 구성요소 중 고객과 취급기관시스템간 전문 송·수신, 개설기관 원장기록 등 각 참가기관이 해당기관 소정의 방식에 의거 검증, 처리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② 참가기관이 이 세칙 및 설계서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은 해당 참가기관에 그 책임을 귀속한다.
- ③ 참가기관은 참가기관 간에 분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양식 4 「전자금융공동망 분쟁처리의뢰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제원에 중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결제원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관련 자료 등을 엄정히 검토하여 해당기관간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정한다.
- ④ 결제원은 해당기관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분쟁에 관련된 기관은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2조(고객과의 분쟁처리)** ①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해당 참가기관이 분쟁처리 관련 자료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결제원 및 타 참가기관의 업무총괄담당부서에 의뢰해야 하며 동 의뢰를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 및 참가기관이외의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의 분쟁처리 의뢰는 관련 참가기관이 접수하며 자료의 원본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거래의 취급기관 및 개설기관의 업무총괄담당부서간에 상호 협의하여 그 처리를 결정한다.
- ③ 결제원은 고객이 참가기관에게 행할 각종 통지를 결제원에 한 경우 동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절 연계결제시스템의 업무처리

제53조(처리대상) 참가기관은 중계업무 중 거액 타행이체에 대해서는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제54조(업무의 처리) ① 고객의 거액 타행이체 요구가 있는 경우 취급기관은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결제전용예금계좌에서 실시간으로 결제하고, 개설기관은 그 결과를 전송받아 처리한 후 취급기관을 통해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응답한다.

② 거액 타행이체는 취소 또는 자금청구반환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 따른 반대거래로 처리한다.

③ 거액 타행이체 중 한은금융망을 통해 참가기관간 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입금불능 등으로 수취계좌에 입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개설기관은 반대거래 등을 통해 결제금액을 취급기관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연계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처리시 이 세칙 등에 따른 장애, 미완료 등 비정상 거래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55조(거래의 집계 및 대사) ① 연계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종료 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 따라 참가기관과 연계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액 타행이체 거래의 건수·금액을 집계/대사한다.

② 연계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종료 후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 거래 집계 및 대사내역 차이 등에 따른 참가기관간 반대거래는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자금이체 거래에 대한 집계 및 대사에 따른 처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제56조(기타) 연계결제시스템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스템 운영시간 등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계결제시스템 관련 기본설계서 및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차액 결제

제1절 기관간 차액결제

제57조(차액결제일) 전자금융업무 거래에 대한 참가기관 상호간의 전자금융업무 거래차액은 거래일 익영업일에 결제한다. 다만, 미완료거래 등으로 인한 자금결제는 이 세칙 제2장 제5절 내지 제7절에서 정한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58조(결제자료의 작성) 자금결제에 필요한 전자금융업무 거래 결제자료는 결제원에서 일괄 작성한다.

제59조(거래집계 통보 및 확인) ① 결제원은 전자금융업무 종료 즉시 참가기관의 처리전수, 금액을 차대변으로 구분 작성하여 각 참가기관별로 온라인 전송한다.

② 결제원은 참가기관 요청시 해당 참가기관의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요약」 및 「전자금융공동망 미완료거래 내역」 등을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해당 참가기관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요약」을 해당기관처리결과와 대사·확인하여 결제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0조(결제원의 차액결제처리) ① 결제원은 「전자금융공동망 결제지시서」를 작성하여 거래 익영업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지정처리시점(이하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이라 한다.) 1시간 전까지 참가기관으로 송부한다.

② 결제원은 거래일 익영업일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 1시간 전까지 한국은행에 참가기관별 결제금액 내역을 온라인 전송한다. 다만, 온라인 전송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결제원은 결제원 사정으로 전자금융공동망 차액결제 자료의 전송이 지연될 경우, 거래일 익영업일 차액결제 처리지정시점 1시간 전까지 별지양식 6의 「전자금융공동망 차액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를 참가기관 및 한국은행 앞으로 FAX통보한다.

제61조(참가기관의 차액결제처리) ① 참가기관의 자금결제담당부서는 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한 「전자금융공동망 결제지시서」에 의거 해당기관의 미결제 환차계정을 차기 또는 미결제 환대계정을 대기한다. 다만, 미결제 환차/대 계정이 없는 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계정에서 차기 또는 대기한다.

② 참가기관의 한국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전자금융업무 차액결제에 부족할 경우, 해당 참가기관은 규약 제10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한국은행의 차액결제처리) ① 한국은행은 결제원의 의뢰에 따라 참가기관의 전자금융업무 차액을 해당 당좌예금계정에서 대차대체하여 결제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2절 기관간 자금조정

제63조(자금조정 대상금액)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타행이체(취소) 업무처리에 따른 자금조정 대상금액은 거래당일 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집계내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자금융거래차액(의뢰거래금액과 지급거래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단, 휴일 거래분에 대해서는 자금조정 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제64조(자금조정 정산) ① 전자금융거래 부 기관은 전자금융거래 차액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한다)의 자금조정 대상금액에 결제일 전전영업일의 1일물 콜평균금리(이하 “기준금리”라 한다) 및 자금부담일수(결제일에서 거래일을 차감한 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원미만 절사)을 한국은행에 예치된 당좌예금계정의 이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승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에서 전영업일에 적용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②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지정하는 자금중개회사의 원화 콜거래 중 투신사간 거래를 제외한 거래의 일중 평균금리(결제일의 전전영업일 기준이며 소수점 2자리까지 적용)로 한다.

③ 제1항의 단서 또는 자금조정 정산후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확정된 기준금리로 자금조정 금액을 재산출하여 기관간 정산한다.

④ 자금조정금액 산출 시 원 미만을 절사함에 따라 참가기관 간 대차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단수를 조정함으로써 대차금액을 일치시킨다.

제65조(자금조정 정산절차) ① 결제원은 「전자금융공동망 자금조정 결제지시서」를 작성하여 결제일에 참가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결제일에 한국은행 앞으로 참가기관별 자금조정 결제금액을 전송하고 한국은행은 이에 의거 해당 참가기관 당좌예금계정에서 대차하여 결제한다.

③ 자금조정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 제1절의 처리절차에 준한다.

제66조(자금 청구반환처리에 따른 자금조정) 전자금융공동망 타행이체 관련자금의 청구 또는 반환처리를 한 거래에 대한 자금조정은 해당거래의 원거래일에 관계없이 자금 청구반환 당일에 발생한 정상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4장 보칙

제1절 담당부서의 선임

제67조(담당부서의 선임) 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금융업무 담당부서, 책임자 및 담당자를 선임하여 기관간의 업무연락 및 처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관련부서는 전자금융업무 중 미완료거래의 처리 및 이로 인한 자금의 청구 반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2. 전산관련부서는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을 통한 각종 거래전문의 처리 등 전산처리의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3. 업무총괄부서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한 신규업무의 기획과 고객 및 참가기관 간 분쟁관련사항 등 후선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68조(선임 및 변경 처리) 참가기관은 전자금융업무 참가시 별지양식 1의 「인감신고

서」 및 별지양식 2의 「전자금융공동망업무 담당자 선임통지서」를 결제원에 제출하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감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고 변경된 담당자 내역은 유선 등으로 결제원에 통지한다.

제2절 자료배부 및 사용양식

제69조(자료의 종류) 결제원은 전자금융업무의 거래기록에 따라 동 업무상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참가기관으로 배부하며 「사용양식」의 종류는 별표와 같고 기타 자료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자료의 수발) ① 일간자료는 거래의일 또는 거래일의 익영업일에, 월간자료는 거래의월 제 3영업일에 배부한다.

② 결제원은 일괄전송을 활용하여 배부자료를 참가기관 앞으로 송부한다.

제71조(자료의 재작성) ① 참가기관은 별지양식 3의 「전자금융공동망 자료 재작성의뢰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결제원에 필요한 자료의 재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재작성 의뢰자료는 해당 거래기록의 보관기간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② 결제원은 자료의 재작성 의뢰접수시 해당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배부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다.

제72조(자료의 용도의 사용금지) ① 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전자금융업무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결제원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운영으로 취득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전자금융업무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기타

제73조(세칙의 개정) 이 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결제원은 동 개정내용을 참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전산접속) 결제원과 참가기관간 전산접속에 관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 시스템 전산접속기준」에 따른다.

부칙(2000.10.19)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 3. 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2.2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 3. 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6)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 10. 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26)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 4. 2.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6)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10.2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제3절의 시행일자는 금융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06. 1.1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 1.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6)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 5.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18.)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 1 . 1 .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의 시행일은 2007. 8. 2로 한다.

부 칙 (2007. 9.19.)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 10 . 19 .부터 시행한다. 단, 제42조의 시행일은 2007. 10. 26.로

한다.

부 칙(2009. 1.14)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25)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20)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 9.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24)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 11.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23)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 9.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15)

이 세칙은 결제원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8)

이 세칙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이 세칙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27)

이 세칙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5)

이 세칙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4)

이 시행세칙은 2018. 12. 4. 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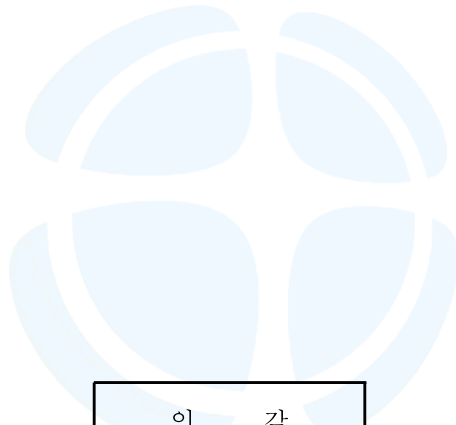
양식번호	양식명
1	인감신고서
2	전자금융공동망 담당자 선임통지서
3	전자금융공동망 자료 재작성의뢰서
4	전자금융공동망 분쟁처리의뢰서
5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통보서
6	전자금융공동망 차액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
7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데이터 입력 및 해지 요청서
8	(삭 제)
9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요청서
10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결과통보서
11	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
11의2	자금반환 의뢰서
12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전자금융공동망 미완료거래 담당책임자의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인 감

기관명 : _____

부(팀,소)장 _____

전자금융공동망 담당자 선임통지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전자금융공동망 담당자(담당부서)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구 분	담당업무	담당부서	직급	성 명	일 자	전화번호

* 작성요령

1. “담당업무”는 전자금융공동망의 각종 업무(자금, 전산, 업무총괄 등)를 기재
2. “담당부서”는 해당기관내의 담당부서를 상세히 기재
3. “직급”은 각 업무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구분하여 기재
4. “일자”란은 선임(변경)일을 기재
5. “전화번호”는 외부 및 내부번호와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
6. 기타 통지사항 및 이와 관련된 조치담당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재

기관명 : _____ 부(팀,소)장

전자금융공동망 자료 재작성의뢰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자료작성을 의뢰합니다.

자 료 명	기 간	비 고

기관명 : _____ 부(팀,소)장

접 수 일	200 . . .	처 리 일	200 . . .	배 부 일	200 . . .
-------	-----------	-------	-----------	-------	-----------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인)

전자금융공동망 분쟁처리의뢰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당 기관과 _____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중재를 의뢰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해당거래의 내용

1. 거래년월일시각 : :
2. 취 급 기 관(지점명 포함) :
3. 취급기관전문관리번호 :
4. 개 설 기 관 :
5. 계 좌 번 호 :
6. 거 래 금 액 : _____ 원정(금 _____ 원정)

II. 분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

III. 증빙자료(첨부)

기관명 : _____ 부(팀,소)장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통보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 기관의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해당사항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 장애발생업무 : CD 타행환 전자금융 지방은행

- 장애발생일 : 년 월 일

- 장애발생시각 : 시 분

- 장애복구일 : 년 월 일

- 장애복구시각 : 시 분

- 장애사유 :

기관명 : _____ 부 장 (인)

전자금융공동망 차액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

년 월 일

참가기관(한국은행) 자금담당부서(업무부)장 귀하

전자금융공동망 차액결제내역 송부가 아래와 같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통보합니다.

1. 송부예정시간 : 시 분
2. 지연 사유 :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인)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데이터 입력 및 해지

요청서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당 기관의 자기앞수표 사고신고데이터 결번내용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번호	구분	기관	지점코드	수표번호	발행일자	권종코드	수표금액	접수일

* 작성요령

- 전문번호 : 결번전문 관리번호
- 구 분 : 등록 01, 삭제 02

기관명 : _____ 부(팀,소)장 인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요청서

년 월 일

기관명 : _____ 부(팀, 소)장 귀하

아래와 같이 중계센터의 거래데이터가 소실되었기에 귀 기관의 거래데이터 송부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발생 일 : 년 월 일

- 발생 시간 : 시 분

- 송부대상 자료

- 년 월 일 거래데이터
- 기관별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집계표(거래데이터 복구용)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인)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데이터 송부결과통보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이 년 월 일 거래데이터 및 기관별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집계표
(거래데이터 복구용)를 송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 송 부 시 간 : 시 분

- 송 부 방 법 :

- 담 당 자 및 연 락 처 :

- 기 타 사 항 :

기관명 : _____ 부(팀, 소)장 (인)

【양식 12】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
송화자	기관명 :	수화자	기관명 : 금융결제원
	부서명 :		부서명 :
	직위/성명 :		직위/성명 :
<p><input type="checkbox"/> 장애발생기관 :</p> <p><input type="checkbox"/> 장애발생업무 :</p> <p><input type="checkbox"/> 장애발생일 : 년 월 일</p> <p><input type="checkbox"/> 장애발생시각 : 시 분</p> <p><input type="checkbox"/> 장애복구예상일 : 년 월 일</p> <p><input type="checkbox"/> 장애복구예상시각 : 시 분</p> <p><input type="checkbox"/> 장애사유 :</p>			